

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08. 10. 24

개정 2021. 3. 26

- 제 1 조 (목적)**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(이하“학회”라 한다)의 윤리헌장에 따라 학회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,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,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윤리규정 적용 범위)** ①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및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샵,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. ②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, 심사위원, 편집위원, 사무국 실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. ③ 기타 위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범위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- 제 3 조 (저자의 정직성)** ①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.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, 실험에 대한 설계, 실험과 결과의 분석, 연구비 지원, 연구결과물의 출판,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. ② 저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, 사기, 조작,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,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③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,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(저자의 자격)**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기준은 제1저자, 교신 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를 대상으로 한다.
1. 연구 논문의 구상, 설계,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, 해석에 실제로 기여한 자
2.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논문의 주요 내용을 학술적으로 개선한 자
3. 최종 원고의 출판에 동의한 자
4. 논문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대응 책임에 동의한 자
- 제 5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,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 6 조 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.
1.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
2.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
3.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
4.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
5.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
- 제 7 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재적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(피 제소자)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. ③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. ④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.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,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 8 조 (연구발표 부정행위의 범위)** ① “표절”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치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② “위조” 및 “변조”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나 변형,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 ③ “이중게재”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 ④ “부당한 저자표기”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. ⑤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말한다.

제 9 조 (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) ①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과 학회지(소음·진동)에 발표된 간행물에 한한다. ②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 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.

제 10 조 (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 ①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.

1.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
2. 5년간 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금지
3.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
4.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
5. 학회 회원자격 박탈

②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피조사자 권리 보호)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 및 관련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,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공의 복리 등 사회 통념에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·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 :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(제정).